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심의결과

1. 심의안건 : 임의직이사 선임(안)외 3건
2. 심의일시 : 2011. 2. 25(금), 11:00 ~ 12:10
3. 의결방법 : 소집개최하여 구두 의결
4. 의결종족수 : 재적이사 29인중 19인 참석의결 (참석자 현황 붙임)
5. 의결결과 : 임의직이사 선임(안)외 3건 원안의결(회의록 붙임)

심 의 안 건		의 건		
		동 의	반 대	기 타
제1안건	임의직이사 선임(안)	○		
제2안건	2010회계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안)	○		
제3안건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내역 승인(안) ¹⁾	○		
제4안건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 보고 및 기금원본 감소(안) ²⁾	○		

¹⁾ 201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 지체사유 및 예비비 사용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 승인 함.

²⁾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 보고 및 원본감소(안)은 실적보고용으로만 승인하며, 원본감소(안)은 추후 법원 판결 등 최종 판결 후 이사회 보고 및 행안부 승인 요청을 전제로 원안 승인 함

6. 기타서류

가. 회의록 : 붙임

나. 참석자 이사 현황(대리인 참여자 위임장 포함) : 붙임

2011년 제1차 정기이사회

□ 일시 : 2011. 2. 25일

소속 및 직위	이사성명	참석자			서명
		소속	직위	성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표환				한표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	김종해	행정기획과	정리담당	김기은	기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최두영	기획지원과	홍양팀장	윤승호	승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이주석	재정정책과	서기반	이재영	재영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송영철	지역개발과	사무반	고상욱	고상욱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장	이영환				
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여희광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정태욱	기획지원과		이영환	태욱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	김영선	기획지원과	기획지원팀장	김기영	기영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조육형	기획지원과	기획	김관영	관영
울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최문규	"	"	김관영	문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지원과	기획지원과	이재영	수영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김상표	기획지원과	기획관	이재영	상표
충청북도 정책관리실장	고규창	사무사무소	사무	박영민	규창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사무사무소	총무과장	서재형	기식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인재	"	기획지원과	윤승호	인재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이종범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	고규창				
경상남도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박재현	사무사무소	부서장	최진우	재현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차우진	사무사무소	사무	양창훈	우진

소속 및 직위	이사성명	참 석 자			서명
		소속	직 위	성 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김동건	서울대	교수	김동건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승중	서울대	교수	이승중	이승중
중앙대 사회과학대 교수	박완규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김한걸	경의리	사무처장	김한걸	김한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김태겸				
전)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정문건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최병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김현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남궁근				

2011. 2. 25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기획조정실 서무관리팀

-
- 일시 : 2011. 2. 25(수), 11:00~12:10
 - 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하1층 회의실
-

□ 심의안건

1. 임의직 이사 선임(안)
 2. 2010회계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안)
 3.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내역 승인(안)
 4.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 보고 및 기금원본 감소(안)
-

□ 의결내용

- (사회자) 성원보고
정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이사 29인중 19인이 출석하시어 과반 이상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사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 하겠음
<의사봉 3타>
- (사회자) 국민의례 및 참석이사 소개
- (이사장)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
 - 바쁘신 가운데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참석을 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작년 연말 12월에 금년도 사업계획과 금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소집했음. 이사회는 연구원 최고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중요한 현안들을 여러 이사님들 모시고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연구원의 운영사항을 소상히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겠음
- 이사회는 서면부의를 많이 했으나, 가급적이면 연구원에 대한 운영을 지자체에 알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연구원에 대한 바램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반영하기 위해 가급적 소집하여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임 중에는 가급적 이사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자 함
- 오늘 이사회는 2월 말로 작년도 결산보고를 해야 할 시점에 다가와 있으며, 일부 임의직 이사님들 중 임기 만료된 임의직이사를 선임, 기금운영실적 운영을 보고 드리고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 이사회는 중요한 기구이며 연구원의 의결기구로써 연구원 운영현황 및 현재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고와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한 가운데 중요한 현안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함
- 연구원에 취임한지 1년이 넘었음. 그사이에 1년동안 운영함에 어려운 점이 많았음. 그 중 연구원 운영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작년에 힘들었음. 작년 결산서를 보시면 내용이 그다지 충실하지 못했음.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재원이 마련되기 위해 행안부와 예산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원육성법이 지난 2.16일 통과되어 앞으로 2주정도면 공포됨. 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체성을 구체화해야 하는 시기에 다가와 있음. 예전에는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출연만 받아왔지만 이제는 국가출연의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법적제도 장치를 마련할수 있으며 점진적으로 국가출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야 국가출연을 받을 수 있을 명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며 참석하신 이사님들께서 앞으로 지자체가 출연을 확대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많은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두번째, 정부정책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지만, 내년도 12월 말까지 원주 강원혁신도시에 이전을 해야 함.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에는 현사옥 매각하여 혁신도시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함. 매각시기가 임박하면 전체적인 매각계획이나 구체적인 절차등을 이사회 협의해서 의결을 받고자 함. 현재는 구체화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강원도·원주시·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점차 매각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이전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 내년 초쯤이면 이사회 보고하여 차질이 없게 하고자 함
-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으나 적은 인력에 좋지 못한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음. 미력하나마 각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연구원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나 생각함.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이사회때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o (사회자) 다음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o [이사장] 지금부터 심의안건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안건은 4건으로, 먼저 제1안건인 “임의직이사 선임(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이삼주 기획조정실장) ‘임의직 이사 선임(안)’ 제안설명
 갖고계신 자료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정관 제14조-제15조에 의거 임의직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로 되어있으며, 임기는 2년 중임하도록 되어있음. 이전에 임의직 이사는 2월 26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므로 새로 이사를 선임하게 되었음
 선임된 내용은 (선임대상자 추천현황 참조)
 김동건 이사님, 이승중 이사님, 박완규 이사님, 김한걸 이사님 등 4분은

전임이사로서 재추천(유임)하는 것으로 했으며, 나머지 이사님은 새로 추천하게 되었음. 새로운 이사 간단히 설명하겠음

이언오 원장님은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서 현재 전국 시도 연구원 협의회장이시며, 김순은 교수님은 동의대 교수로서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사이며, 이기우 교수님은 인하대 교수로서 대한교육법학회 이사이며, 손희준 교수님은 청주대 교수로서 한국지방재정학회 이사, 강병수 교수님은 충남대 교수로서 한국도시행정학회 이사 역임하셨으며, 임경수 교수님은 성결대 교수로서 한국도시행정학회 고문을 맡고 계심. 선임된 이사님은 학계, 연구원 관련분야에 전문성 갖추신 분으로서 학회장 등의 능력을 갖추신 분으로 추천되었음

이전에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더 추천했음. 임기는 전 임기가 끝나는 2011년 2월 27일부터 2013년 2월 26일까지(2년) 임

- (이사장) 임의직이사 선임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제1심의안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 가겠음
- (이사장) 제1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사들) 없습니다 .
-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o (이사장) 제2안건인 “2010회계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안)” 을 상정하겠음. 심의안건에 대해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음

- (이삼주 기획조정실장) ‘2010회계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안)’ 제안설명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 (이사장) 제2심의를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오늘 참석이사님 중 일부는 경리계통에 밝으신 분이 오신 것 같은데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음
- (이사장) 제2심의를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사들) 없습니다
-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o [이사장] 제3안건인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내역 승인(안)” 을 상정
하겠음.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음**

- (이삼주 기획조정실장)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내역 승인(안)’ 제안설명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 (이사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용
역사업을 수행하다보면 회계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도 있음. 회계
연도가 2개년으로 시작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
선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하고 사후 정산시스템으로 하고 있음. 어떤 때
는 용역수탁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예산을 편성하
여 운영하기에 시간적으로 힘들 경우에는 사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모두 회계원칙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지만 일
부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예비비 사용을 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경
우가 있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한걸 사무처장) 광특회계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하지만 재난안전사업은 국고보조금입니까?
- (이삼주 기획조정실장)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R&B사업임.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 (행안부 윤승노 계장) 지출은 언제했습니까?
- (이삼주 기획조정실장) 2009년도 말에 사업을 완료했음
- (행안부 윤승노 계장) 아니요. 잔액 반납시점은 언제입니까?
- (이삼주 기획조정실장) 잔액 반납한 시점은 2010년도입니다
- (행안부 윤승노 계장) 몇 월에 반납했습니까?
- (김상우 팀장) 4월달에 반납했습니다
- (행안부 윤승노 계장) 원장님의 말은 이해하나 작년에 실질적으로 추경을 2번씩 했음. 연구원에서 보면 작년 추경을 일반회계를에서 반납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추경할 때 이사회에 보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회계연도 지나서 보고한다는 것은 연구원에서 잘못했고, 저희 행안부나 이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람
- (이사장) 이와 관련하여 부연설명 바람

- (김상우 팀장) 이 사업 같은 경우 09년도에 진행해서 09년도에 종료된 사업임. 용역사업이라 정산하여 행안부에 제출을 하였음. 저희 쪽에서 완료되었다 생각하여 제출을 하였고 이후에 10년도에 행안부에서 정산액이 나왔음. 별도의 예산과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 규정에 별도의 예산과목 만드는 것은 힘든 부분이라 생각하였음. 추경할 때 반영해야 미리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불찰한 것 같음
- (울산 강철수) 예비비로 집행할 대상입니까?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 양창호)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잔액이 남으면 잉여금으로 결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결산처리 했습니까?
- (김상우 팀장) 용역사업을 정산하게 되었는데 09년도에는 정산할때에는 정산을 완료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했음. 저희가 종료사업으로 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되어 있음
- (제주 양창호) 잉여금으로 되었다 말입니까? 잔액을 반납 설정해서 해야 하는데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동건 이사) 연구원 입장에서 다 끝난 과업으로 알고 행안부에서 감사도 받고 해야 하다보니까 들쭉 쓴 것으로 되어야 하니까 반납해야 하겠고 적절한 예산항목이 없어 이런 것 같음
- (울산 강철수) 예비비항목이 맞습니까? 예비비는 무엇을 충당한다고 정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삼주 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을 경우 예비비를 설정하거나 별도의 예산항목이 없을 경우 예비비로 설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울산 강철수) 적시에 적정한 시점에 예산의 집행을 못해 예비비로 조치한 사항이 아십니까? 예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 대상이 아니라, 다른데 넣고 결산하기 곤란하니까 예비비로 사용한것 아닌가요?
- (김상우 팀장) 용역같은 경우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09년도 사업을 정산하여 종료를 시켰음. 09년도에 사업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이월 시킬 수 없었던 사항이었음
- (울산 강철수) 시기자체를 멸실했던 사항을 예비비로 처리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명확한 큰 위법사항입니다
- (지방행정연수원 김기은) 정산을 했다고 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정산해서 집행받은 것으로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된 경우에는 이자를 반납하지 않아도 됨. 그 사업을 하지 못했거나 실수를 하지 않을 경우 등 사유가 없으면 국고보조금이나 연구보조금 자체가 이자를 반납하지 않아도 됨. 시기를 늦게했다고 반납한 경우는 없는데 향후에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람
- (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반납한 부분보다는 사업설계 내용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행을 제대로 안해서 반납을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음. 과업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을 제대로 착안을 하지 못해 해외출장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음
- (지방행정연수원 김기은) 사업전체가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다면 사업비 잔액만 반납하면 되지 사업비에서 생긴 이자는 반납하지 안됨
- (이사장) 행안부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 (김동건 이사) 연구원 입장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산타이밍을 늦춘 거 아닙니까? 정산을 나중에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회계처리가 끝나기 전에 행안부와 정산을 완료하시면 안 됩니까?
- (이삼주 실장) 과업이 끝나기 전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비는 과업이 완료된 시점에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정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음. 정산시점이 저희 연구원에서 늦춘거는 아니고 R&D사업 같은 경우 정산시기가 사업이 회계연도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정산시점이 4월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진 시점이었음
- (행안부 윤승노 계장) 왜 작년 4월 정산한 것을 이제와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삼주 실장) 그 당시 정확하게 정산액수를 파악하지 못했음
- (행안부 윤승노 계장) 작년 12월달에도 올해 예산도 심의 했고, 사업계획도 추경했는데 정산이 안되어 있으면 그때도 정산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 (이사장) 그 당시 타이밍을 못맞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이삼주 실장) 없음
- (이사장) 제가 보기에 실무자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산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고 일반회계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회계항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여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울산 강철수) 지방행정연구원은 행안부 관련 부서에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면 지도를 잘 안 받는다던지 행안부지시를 어긴다던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사장)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한번 조사를 한다던지 여 내용을 파헤쳐 혹시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위배한 징후가 나타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경 정책협력관) 예비비 자체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연구원에 온지 얼마 안되어 파악을 못했지만 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 행안부에 협의를 거쳐 진행 한 것 같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을 각 이사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니 명확하게 하여 납득 부탁드립니다
- (울산 강철수) 관련자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행안부 소관부서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용도 명확히 할것이며 잉여금 과목이 있음. 예비비 사용용도와 사용시기 작년연말에 보고를 해야지, 지금까지 지난 시기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관련자 조치 필요함. 그냥 넘어간다면 않됨. 상세히 조사요망함 행안부의 지시를 명확히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이사장)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 왜 발생했는지 사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표결

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종 이사)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상정하느냐? 왜 예비비항목으로 처리하느냐 2가지 인데 왜 지금 상정하는 부분은 심각하지 않은 문제 인 것으로 용역과제가 정산은 보통 감사부처가 사후에 하는데 지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은 문제인것 같습니다. 다만 항목 인데 연구원의 예산과목이 예비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냐? 아니면 다른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처리했냐? 에 대해서 연구해서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사장) 왜 이제 와서(시기) 상정을 했는지? 그리고 왜 예비비항목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사들) 없습니다

-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o **[이사장] 제4안건인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 보고 및 기금원본 감소(안)” 을 상정하겠음. 심의안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음**

- (이삼주 기획조정실장)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 보고 및 기금원본 감소(안)’ 제안설명

*설명내용은 자료 참조(생략)

- (이사장) 기금원본 감소에 대해 가슴아픈 일입니다. 원금이 손실되어

연구원 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건 이사) 어쩔 수 없는 상황아닙니까? 다만 금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사장)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손실이라는 사고를 당해 가급적 안정성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 금융환경이 나아진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구입하여 원금수익을 늘리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예정없습니다
- (김한걸 이사) 177,800만원 수익금 난 것 기금손실이 일부 보전된 것으로 얼마가 보전되었습니까?
- (김상우 팀장) 12월 달에 추경하면서 6억원을 보전하였습니다
- (지방행정연수원 김기은) 기금담당자와 책임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 (이사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방행정연수원 김기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 (이사장) 예,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지방행정연수원 김기은) 현재 근무를 하는 상태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 (이사장) 형사상의 소송은 끝난 것 같고 민사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 (행안부 윤승노 계장) 작년도에도 이사회를 해서 올해도와 똑 같은 입장으로 행안부에서 보류하고 있는 입장인데 보고하는 내용은 좋은데 차후에 민·형사상 재판이 끝나면 최종보고를 해주시고, 의결로 행안부에 업무감사보고 해줬으면 좋겠고 매건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난 후 이사회 보고와 행안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장) 최종적으로 연구원 민사재판이 끝난 후 기금원본 감소 등 전체 액수를 이사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음

의의가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판 종료되는 시점에 투자손실 액수를 다시 이사회에 보고 하겠음.

그러면 현재 이사회 보고된 내용은 참고자료(보고용)로 드리도록 하겠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타 보고드릴 내용이 있으십니까?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걸 사무처장) 사업실적보고서 10~12페이지 연구사업 추진실적 보면 중점정책연구과제, 현안정책연구과제, 수탁, 수시 연구과제가 나열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관계가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 건전화 위주로 되어있고 청와대에서 재정확충에 대해 건의도 하고 논의도 하였음
시군구도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든지 일자리 창출, 구제역 대책 등 정책 연구과제나 현안과제 등 근본적 재정확충에 중점 맞춰 연구 해주셨으면 함

(이사장) 최근에 와서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하고 나서 지방재정확충을 들고 나오면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서 금년부터 여력이 되는대로 연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

(김한걸 사무처장) 지방소비세가 원래는 2.5%인데 2013년도부터 10%로 인상 되게 되어 있음. 적극 검토해 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지방소비세도입을 주관하고 계신 김동건 교수님이 계시지만 2013년도에 부가가치세를 올리도록 약속했지만, 저희는 옆에서 측면 지원하는 입장임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람

- (이사장) 제 4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사들) 없습니다

- (이사장)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의사봉 3타>

○ (이사장) 2011년도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관련이 있음. 이사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를 모두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

2011. 2.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사장 직무대행 한 표 환

□ 출석이사 19인(이사장 포함) : 서명자료 별첨참조

한표환, 김동건, 이승중, 김한걸

김종해(김기은), 최두영(윤승노), 이주석(이재성), 송영철(김상국),
정태욱(이상범), 김영선(김경택), 조욱형(김장원), 최문규(강철수),
박수영(이한경), 김상표(안계영), 고규창(박영선), 김기식(서재청),
이인재(조영우), 박재현(최진옥), 차우진(양창호)

※ (괄호)는 대리참석자

□ 출석 직원 9인

최재경 정책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이삼주, 자치행정연구실장 금창호,
지방재정연구실장 서정섭, 지역발전연구실장 김현호, DB센터소장 전대욱,
연구기획과장 유순기, 행정팀장 김상우, 서무관리팀장 김희우(사회자)

○ 2011년 제1차 정기이사회 사진자료



목 차

1. 제1심의안건 임의직이사 선임(안) ----- 1
2. 제2심의안건 2010회계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안) ---- 4
3. 제3심의안건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내역 승인(안) ---- 11
4. 제4심의안건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실적 보고 및 기금원본 감쇠안- 14

제1심의 안건

임의직이사 선임(안)

2011. 2.

1. 의결주문

당 연구원의 임의직 이사 선임(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연구원 임의직 이사 임기종료에 따라 2011년도부터 임의직 이사를 추천 및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임대상자 추천현황

성명	소속/직급	주요경력	비고
김동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전임 임의직이사 (재추천)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한국지방정책연구소 소장 ◦ NGO학회 부회장	전임 임의직이사 (재추천)
박완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전임 임의직이사 (재추천)
김한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사무국장	◦ 경북 봉화군 부군수 ◦ 행정자치부 총무과 부이사관	전임 임의직이사 (재추천)
이연오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 현)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장 ◦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연구위원)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관 (차관보급)	연구원 추천
김순은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현)한국지방정부학회장	연구원 추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대한교육법학회장, 경실연 정책위원장	연구원 추천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현)한국지방재정학회장	연구원 추천
강병수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현)충남대 사회과학대학장, 한국도시행정학회장	연구원 추천
임경수	성결대 지역사회개발학부 교수	◦ 현)한국도시행정학회 고문	연구원 추천

- 임의직이사 인원수 : 총9명 → 총10명 (증 1명)
- 임 기 : 2011.2.27~2013.2.26(2년, 중임 가능)
- 이사의 보수 : 실비보상(회의참석수당, 여비)
- 근무조건 : 비상근

4. 의결사항

당 연구원 임의직이사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

5. 참고사항

- 임의직 이사 선임관련 근거
 - 연구원 정관 제14조(이사의 선임)
 - ② 임의직 이사는 관계분야의 저명인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연구원 정관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의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추진절차
 - 추천된 후보자 이사회의 선임절차 진행
 - 이사회 선임완료 이후 선임된 이사들의 법인등기신청 관련서류 취합후 관련서류 제출
 - 법원등기과 등기신청 승인완료 이후 임의직 이사등기 완료

6. 기 타

- 관련규정 : 정관 제14조(이사의 선임)
- 개정절차 : 이사회 심의의결 후 선임(이사등기)

제2심의 안건

2010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안)

2011. 2.

1. 의결주문

2010회계년도(제27기 : 2010.1.1~2010.12.31)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2010년도 사업실적과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사결과를 이사회 의결을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0년도 주요사업실적 : 세부내역은 별첨된 2010년도 사업결과 보고서 참조

○ 당초계획 대비 실적 비교

분야별		구분	당초계획	추진실적	차이	비고
1. 연구사업	가. 기관고유	중점정책연구과제	7대과제 (39소과제)	7대과제 (39소과제)	-	
		현안핵심정책연구과제	54건	54건	-	
		특별연구과제	1건	1건	-	
		수시연구과제	6건	6건	-	
		자체연구과제	2건	2건	-	
		수탁용역과제	20건	20건	-	
		연구자료집	4종	4종	-	
		교육연수	4종(17회)	4종(17회)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지원단사업	1건	1건	-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사업	1건	1건	-	
2. 연구관련 사업	가. 학술행사	국내세미나	11회	13회	증 2	
		국정아젠다워크숍	1회	1회	-	
		지방공무원정책연구발표대회	1회	1회	-	
	나. 국제협력	LOGOTRI사업	1건	-	△ 1회	
		중국행정학원관련사업	1건	1건	-	
		연구교류사업	5건	2건	△ 3	
		일본지자체공동사업	1건	2건	증 1	
		국제행사참가 등	2건	4건	증 2	
	다. 국제세미나	국제세미나	1회	1회	-	
	라. 컨설팅사업	토탈컨설팅	1종	1종	-	

분야별	구분		당초계획	추진실적	차이	비고
3. 연구지원 사 업	가. 창의혁신	VOC처리통합체계 구축	1회	1회	-	
		창의혁신역량강화	1회	1회	-	
		고객만족도조사	1회	1회	-	
		KRILA 자치포럼	6회	5회	△ 1회	
		COP학습동아리운영	1종	1종	-	
	나. 각종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2회	1회	△ 1	
		연구심의위원회	수시	27회	-	
		정책실무협의회	4회	4회	-	
		정책간담회	수시	2회	-	
		시도연구원협의회	2회	3회	증 1회	
	다. 홍보	연구원 홍보	수시	9회	-	
	라. 전산·정보 · 도서	브로셔 발간	1회(2종)	1회(2종)	-	
		전산장비 교체사업	1종	1종	-	
		사용자OS 및 S/W업그레이드	1종	1종	-	
		국내외학술지 및 단행본 구입	3종	3종	-	
	마. 발간	중점정책연구보고서발간	1회	1회	-	
		지방행정연구지 발간	4회	4회	-	
		KRILA Focus 발간	12회	19회	증 7회	
		e-Newsletter 발간	12회	8회	△ 4회	
		연차보고서 발간	1회	1회	-	
		자치연감 발간	1종	1종	-	
	바. 복지 및 기타	건강검진료 지원	1종	1종	-	
		선택적복지비 지원	1종	1종	-	
	사. 청사 시설관리	접견실 설치	1종	1종	-	

○ 2010년도 수지결산

(단위 : 원)

기초잔액	수입	지출	기말잔액
35,475,479,963	8,662,451,205	10,169,949,448	33,967,981,720

※ 수입·지출금액은 2010년도 현금의 총 수입·지출 금액이며, 지출 금액에는 기금원본 감소액(2,555,684,221원)포함

- 기금 등 적립상황

(단위 : 원)

구분	전기말잔액	증감액	당기말잔액
기금	30,219,690,977	△2,555,684,221	27,664,006,756
기금충당금	785,000,000	600,000,000	1,385,000,000
퇴직급여충당금	978,264,740	△46,100,440	932,164,300
임대보증금반환금	242,878,000	△69,178,000	173,700,000

※ 기금 당기증감액 (2,555,684,221원)은 기금원금 투자 손실액임

※ 기금충당금을 기금으로 적립시 기금잔액은 29,049,006,756원임

4. 의결사항

- 2010회계년도 사업 및 수입·지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5. 참고사항

- 회계검사자 : 삼일회계법인(행정안전부장관 지정)
- 관계 규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7조, 육성법시행령 제6조, 정관 제11조 및 12조
- 조치 사항 : 이사회 의결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 붙임 : 제27기 결산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2010년도 사업결과 보고서

전년도대비 수지증감내역

▶ 수입

(단위 : 원)

구 분		2010년도	2009년도	증 감	비 고
일반회계	합 계	8,668,889,382	7,311,256,799	1,357,632,583	
	기금회계전입금	1,178,900,528	501,815,807	67,708,4721	
	전 기 이 월 금	700,000,000	600,000,000	100,000,000	
	경 영 회 계 전 입 금	1,775,495,125	1,666,111,536	109,383,589	
	청사 임대 수입	177,171,260	246,775,350	-69,604,090	
	잡 수 입	112,322,469	96,554,106	15,768,363	
	출 연 금 수 입	1,725,000,000	1,700,000,000	25,000,000	
	민간경상보조비	3,000,000,000	2,500,000,000	500,000,000	
경영사업 특별회계	합 계	1,695,356,948	3,433,541,515	-1,738,184,567	
	수탁 용역 수입	1,601,221,520	3,311,653,750	-1,710,432,230	
	교육 연수 수입	80,700,000	121,680,000	-40,980,000	
	잡 수 입	13,435,428	207,765	13,227,663	
수탁용역 이월사업	합 계	1,124,592,000	460,265,960	664,326,040	
	이월예산수입	1,124,592,000	460,265,960	664,326,040	
기 금 특별회계	합 계	30,827,907,284	30,721,506,784	106,400,500	
	전 기 이 월 금	29,049,006,756	30,219,690,977	-1,170,684,221	
	기금 이자 수입	1,778,900,528	501,815,807	1,277,084,721	
충당금 회계	합 계	3,590,864,300	2,006,142,740	1,584,721,560	
	기금손실충당금 일반회계전입금	1,100,000,000	500,000,000	600,000,000	
	기금손실충당금 이 월 금	1,385,000,000	285,000,000	1,10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932,164,300	978,264,740	-46,100,440	
	임대보증금	173,700,000	242,878,000	-69,178,000	

▶ 지 출

(단위 : 원)

구 분		2010년도	2009년도	증 감	비 고
일반회계	합 계	8,668,889,382	7,311,256,799	1,357,632,583	
	운 영 비	6,036,884,547	5,848,998,995	187,885,552	
	충당금회계전출금	600,000,000	500,000,000	100,000,000	
	차기이월금	2,032,004,835	962,257,804	1,069,747,031	
경영사업 특별회계	합 계	1,695,356,948	3,433,541,515	-1,738,184,567	
	수탁용역사업비	783,290,251	1,993,503,799	-1,210,213,548	
	교육연수사업비	47,074,030	54,240,680	-7,166,650	
	수 지 잔 액 일반회계전출금	864,992,667	1,385,797,036	-520,804,369	
수탁용역 이월사업	합 계	1,124,592,000	460,265,960	664,326,040	
	수탁용역사업비	214,089,542	179,951,460	34,138,082	
	일반회계전출금 (불 용 액)	910,502,458	280,314,500	630,187,958	
기 금 특별회계	합 계	30,827,907,284	30,721,506,784	106,400,500	
	일반회계전출금	1,178,900,528	501,815,807	677,084,721	
	기금충당금	600,000,000		600,000,000	
	기금적립금	29,049,006,756	30,219,690,977	-1,170,684,221	
충당금회계	합 계	3,590,864,300	2,006,142,740	1,584,721,560	
	기금손실충당금	1,885,000,000		1,885,000,000	
	기금충당금	600,000,000	785,000,000	-185,000,000	
	퇴직급여충당금	932,164,300	978,264,740	-46,100,440	
	임대보증금	173,700,000	242,878,000	-69,178,000	

제3심의 안건

2010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

2011. 2.

1. 의결주문

- 201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2. 부의사유

- 2010년도 연구원 운영에 있어 당초 미 예측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무회계규정 제10조에 의거 이사회의 사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예비비 사용금액 : 38,472,220원

- 사안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내역	금액	사유
'09년 재난안전사업 정산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13,763,550	①
광특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4,708,670	②

- 사유

- ① 2009년 재난안전정책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
 - 집행액 : 13,649,820원
 - 이 자 : 113,730원
- ② 2009년도 광특회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보조금 보관 이자를 반납
 - 집행액 : 24,708,670원
 - 이 자 : 92,300원

4. 의결사항

- 2010회계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원안대로 승인

5.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재무회계규정 제10조 ②항

제4심의 안건

**2010회계년도 기금 운용실적 보고
및 기금원본 감소(안)**

2011. 2.

1. 의결주문

- 2010회계년도(제27기 : 2010.1.1~2010.12.31) 기금운용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며, 기금운용 결과에 따른 손실액을 기금 원본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심의·의결한다.

2. 부의사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2조에 근거하여 당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하여
 -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기금운용실적을 이사회에 보고 드리고자 하며,
 - 2010년도 기금운용결과 손실액이 발생되었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2010년도 기금운용 실적
 - 기금운용 규모(기금 조성액) : 30,219백만원
 - * 운용 방법 : 금융기관의 금융수익상품에 예치
 - 기금운용 결과
 - 원금 손실 : 2,555백만원
 - 이자 수익 : 1,778백만원
 - 손실 발생 사유 : 금융기관에 예치한 주가연계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중 원금조건부보장형상품이 경제여건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일부 상환되지 못함으로서 원금 손실이 발생함

○ 기금 원본 변동(감소)

- 기초(2010. 1. 1) 기금 조성액 : 30,219백만원
- 기말(2010.12.31) 기금 조성액 : 27,664백만원
- 변동(감소) 금액 : 2,555백만원(원금 손실액)
※ 08년 1월 및 2월에 가입한 ELS손실분

○ 손실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 손실이 발생한 기금예치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전문기관(법무법인 에이펙스)에 의뢰(진행중)
- 기금운용결과 손실에 대해 당시 기금관리책임자와 기금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법률전문기관(법무법인 서광)에 의뢰(진행중)
※ 형사 2심 종료후 재정신청 중, 민사 1심 진행전 조정 중
- 기금손실충당금 설정 : 2010년 기금운용결과 발생한 수익금 1,778백만원을 기금 손실에 일부 보전

4. 의결사항

- 2010회계년도 기금운용 결과 발생한 기금 손실액에 대해 기금 원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의결
 - 기금 원본 변동액 : 27,664백만원(△2,555백만원)

5. 향후 조치사항

- 기금 원본 감소는 이사회 의결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소 조치 완료

6. 참고사항

- 관련 규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2조 제2항
정관 제6조 제3항, 재무회계규정 제30조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3조 및 제12조